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328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변 론 종 결 2022. 3. 22.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8. 10. 5. 접수 제90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D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999년경 위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년경 인천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4. ‘1. C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36,032,399원과 그 중 12,146,805원에 대하여 2000. 5. 19.부터 2005. 3. 4.까지 연 19%의, 9,994,194원에 대하여 1998. 3. 30.부터 1998. 10. 6.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8.까지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05. 3. 4.까지 연 19%의, 513,251원에 대하여 1998. 11. 30.부터 1999. 1. 28.까지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05. 3. 4.까지 연 1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5가단14907호), 위 판결은 2005. 6.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2. 8.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5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사건이 소송절차로 진행되었다(2015가단5279493호). 위 법원은 2015. 10. 23. ‘C은 원고에게 36,032,399원과 그 중 12,146,805원에 대하여 2000. 5. 19.부터 2005. 3. 4.까지 연 19%, 9,994,194원에 대하여 1998. 3. 30.부터 1998. 10. 6.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05. 3. 4.까지 연 19%, 513,251원에 대하여 1998. 11. 30.부터 1999. 1.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05. 3. 4.까지 연 19%,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11.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 등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E은 2018. 7.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자녀 C, 피고가 있었는데, 2018. 10. 2. 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2) 한편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2018. 10. 5.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미등기건물이었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2/7)을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한편 피고는 C이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5년경 인천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C에게 2005. 3. 4. 소장부분 등이 송달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C이 위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익자인 자신이 선의였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8. 10. 5. 접수 제90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면구

별지

1)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선택한다.